

참고

장애인연금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, 신청방법

① 장애인연금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
- (대상자)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·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*) 중 소득하위 70% 이하
 - * 3급 중복 :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
- (지원급여)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
 - ※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,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

(’21년 기준)

구 분	18~64세			65세 이상		
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
기초생활수급자(재가)	30만 원	8만 원	38만 원	기초연금 으로 전환	38만 원*	38만 원
차상위	30만 원	7만 원	37만 원		7만 원	7만 원
차상위 초과	30만 원	2만 원	32만 원		4만 원	4만 원

*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

- (예산) 2021년 예산은 1조2354억 원(국비 67%+지방비 33%)으로, 국비 기준* 8,291억 원
 - * 국비 기준: (’19) 7,194억 원 → (’20) 7,858억 원 → (’21) 8,291억 원
- (수급자 현황) 수급자수는 37만 6438명(’20.11월), 수급률은 72.3%

② 선정기준 [18세 이상 중증장애인*의 소득 하위 70% 수준]

- (선정기준액)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%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,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·재산 수준과 생활실태, 임금·지가·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

<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>

연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단독가구	119만 원	121만 원	122만 원	122만 원	122만 원
부부가구	190.4만 원	193.6만 원	195.2만 원	195.2만 원	195.2만 원

③ [장애인연금 신청방법]

-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, 온라인 신청*도 가능함

* 복지로(<http://online.bokjiro.go.kr>)

-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

* 만 18세 생일이 '21년 5월인 분은, '2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,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